

□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

(앞 쪽)

기본 사항	사업장관리번호		사업장명	
	사업장소재지	(전자우편 : 전화번호 : 담당자 :)		
	급여 수급자 성명		급여 수급자 주민등록번호	
	급여 수급자 주소 및 연락처	(연락처:)		
	육아휴직 부여기간	*고용보험(ei.go.kr)-모성보호 에서 육아휴직기간 검색가능(확인불가시 미기재 접수가능)		
실제복직일 (재직자)			실제퇴직일 및 퇴직사유 (퇴직자)	
사후확인서 지급가능 고용센터 (육아휴직급여 마지막 지급 받은 센터)		인천서부고용센터 팩스 0508-8230-0139 ※ 해당고용센터로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		

계좌번호 □ 기존계좌입금요청 □ 계좌변경요청(은행,)

※ 본 확인서는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구비서류: 6개월 급여내역서(임금대장) 또는 복직확인원(복직발령장) 또는 재직증명서

※ 2020.3.31.부터 계약기간만료, 폐업, 경영상권고사직 등 사업장 사정에 의한 퇴직자는
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산등록 확인 후 신청서 제출 가능(본인이 작성하여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)

위 근로자는 육아휴직 종료 후 동사업장에 복직하여 휴업, 휴직 등 없이 6개월 이상
'실제 근무'하였음을 확인합니다.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합니다.

년 월 일

사업장명

대표자

(서명 또는 인)

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합니다.

근로자명

(서명 또는 인)

인천북부지청장 인천서부고용센터 귀하

<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 확인서 안내문>

1. 육아휴직 종료 후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,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4항에 의거하여, 육아휴직급여의 15% (2015.7.1. 이후 육아휴직 개시자는 25%)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2. 「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」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과 관련된 것으로, 기재 및 확인하여 주신 내용이 허위나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, 고용보험법 제73조, 제74조, 제77조, 제62조제2항 및 제116조제2항 등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3. 서류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

1)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♠ 「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」의 '실제 복직일 등'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.
필요할 경우, 고용센터는 복직원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♠ 실제 복직일로부터 6개월 이상 “실제 근무”한 후 제출 바랍니다.

- 부여된 육아휴직 이후 다시 육아휴직 혹은 개인휴직(유.무급 포함) 등을 계속 하시거나, 복직 이후 6개월 미만 근로 후 다시 육아휴직 및 개인 휴직 등인 경우, 동 확인서를 보관했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♠ 육아휴직 중 새로운 사업장으로 '고용승계(인수·합병·전근 등)'된 경우,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. (예 : 인수합병에 관한 자료, 인사발령장 등)

2) 근로자 본인의 서명과 사업주의 직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.

3) 근로자가 최종으로 지급받던 해당고용센터의 팩스 혹은 우편으로 제출바랍니다.

4. 유의사항

- 확인서의 대상자가 복직 후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직한 경우,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- 접수된 서류 검토 후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, 사후지급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